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도참고자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1. 9. 30(목) / 총 5매(본문3) | |
| 담당부서 | 공정건설추진팀 | 담당자 | • 팀장 박효철, 사무관 하철호, 주무관 김국남 • ☎ (044) 201-3518, 3572, 3497 |
| 보도일시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30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하세요

-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대상 실적전환 시스템 오픈 -
- 미전환 사업자 대상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10월22일 오픈 예정 -
- 실적전환 시스템은 <https://kiscon.net> 으로 접속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·가산*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*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을 최대 50%까지 가산
(’21년 신청시 50% 가산, ’22년 신청시 30% 가산, ’23년 신청시 10% 가산)

○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,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□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,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(실적전환 신청대상) 업종전환을 신청*하여 건설업 등록관청(시도 및 시군구)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(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)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* (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) 대한건설협회에 신청
(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) 시청·군청·구청에 신청

- (시스템 이용방법)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.

-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<https://kiskon.net>) 접속 → “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” 메뉴 →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→ 안내문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 → 최근 5개년 실적금액 확인 및 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첨부 → 실적전환 신청 → 신청내역 최종 확인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‘모의 실적전환 시스템’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-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
-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%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*되고,

-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,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.

* 실적가산 사례

- ① 서울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 중인 ○○건설 김○○ 대표는 토목 시설물의 유지보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토목분야의 실적을 50억 보유하고 있던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라 종합건설업인 ‘토목공사업’으로 전환하였으며, 총 75억의 실적으로 인정받게 됨
- ② 부산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 중인 ○○건설 이○○ 대표는 건축물과 토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고르게 수행하며 건축분야 30억원, 토목분야 30억원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던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라 전문 건설업인 ‘실내건축공사업’과 ‘상하수도설비공사업’으로 전환하였으며, 각각 45억원의 실적으로 인정받게 됨

-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“종합·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,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” 면서,
- 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,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하철호 사무관(☎ 044-201-35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업종전환 신청 절차는?

- ⇒ (답변) 업종전환 신청서를 구비하고, 업종전환 접수기관에 신청
- (종합으로 업종전환 시) 대한건설협회(시도지회)에 방문하거나, 우편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
 - (전문으로 업종전환 시) 시청·군청·구청 등 지역별 건설업 등록 업무 담당기관에 방문하거나, 우편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

2. 업종전환 시, 전환하는 업종의 협회에 자동 가입되는지?

- ⇒ (답변) 전환하는 업종의 협회(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)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, 사업자가 업종전환 이후 자율적으로 판단
- 참고로,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업종전환 사전신청자가 '22년 6월까지 협회에 가입 신청 시 입회비를 50% 감면*

* (대한건설협회) 1,000만원 → 500만원 / (대한전문건설협회) 300만원 → 150만원

3. 업종전환 사전신청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?

- ⇒ (답변) 전환업종 및 실적전환·가산 등에 대해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, 사전신청 기간(~2021.12.31) 내에는 변경신청이 가능

* 예) '21.9월 토목업(종합)으로 업종전환 사전신청하더라도, '21.12.31일 이전 건축업(종합) 또는 전문업 대업종으로 업종전환 대상 변경신청 가능

- 다만,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 행정처리 완료 이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하며,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 완료 이후에는 추가 변경신청 불가

4. 유지보수 공사 입찰참여 시, 전환된 업종과 시설물업종 중 어떤 업종으로 참가해야 하는지? 업종전환 이후 시설물업 공사실적은 추가 실적전환이 가능한지?

⇒ (답변) '23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된 업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종 중 선택하여 입찰 참여

○ 다만, 업종전환 완료 이후, 유지보수 공사를 시설물업체 자격으로 수주하여 쌓은 공사실적은 향후 추가적으로 실적전환·가산* 불가

* (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) 업종전환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
5. 현재 영업정지 중인 사업자도 업종전환 신청 가능한지?

⇒ (답변) 영업정지 기간 중 업종전환 신청 및 공사실적 전환·가산이 가능하며, 영업정지 기간만료* 이후 건설공사 입찰참여 가능

* 다만,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등록기준 충족 이후 업종 전환 및 건설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

6. 업종전환 이후 기존에 축적해 온 신기술·특허가 사장되는 것이 우려되는데?

⇒ (답변) 기존 신기술이나 특허는 업종 개편 이후에도 입찰조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신기술·특허 사용료 수입 등은 개별 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업종전환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

○ 이에 따라, 업종전환 이후에도 개별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해오던 유지보수 공사에도 참여 가능